##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6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박덕흠 • 박상웅 • 최은석

안상훈 • 고동진 • 서천호

김민전 · 김소희 · 박수민

김성원 · 이헌승 · 정동만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 며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으로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거리 는 것'을 추가한 사례가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지켜보는 행위"를 "지켜보거나 서성거리는 행위" 로 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기타 그 밖의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   | 1                |  |  |
| 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                  |  |  |
|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  |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      |                  |  |  |
| 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                  |  |  |
| 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 나                |  |  |
|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                  |  |  |
|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                  |  |  |
|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      |                  |  |  |
| 근에서 기다리거나 <u>지켜보</u> | <u>지켜보</u>       |  |  |
| 는 행위                 | 거나 서성거리는 행위      |  |  |
| 다. ~ 사. (생 략)        | 다. ~ 사. (현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아. 기타 그 밖의 행위    |  |  |